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0. 1. 16.) 주요 과태료 부과금액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제29조 제1항 제2항	정기안전보건교육, 채용·변경 시 교육 미 실시(근로자 1명당) * 위 교육은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자체 교육 가능	10	20	50
	관리감독자 교육 미 실시(관리감독자 1명당) * 위 교육은 사업장에서 사업주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자체 교육 가능	50	250	500
제29조 제3항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미 실시(근로자 1명당) * 위 교육은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자체 교육 가능	50	100	150
제32조 제1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미 실시	500	500	500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 미 실시	100	200	500
	안전·보건 지정기관 업무 종사자 직무교육 미 실시	300	300	300
제37조 제1항	안전보건표지 미 부착(위험한 장소에 대한 경고표지 미 설치 등, 1개소당)	10	30	50
제41조 제2항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미 실시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300	600	1,000
제54조 제2항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 ※ <u>사망재해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없이 고용노동청(지청)에 보고</u> - 중대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000	3,000	3,000
제57조 제3항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 <u>휴업 3일 이상 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 고용노동청(지청)에 보고</u>	700	1,000	1,500
제93조 제1항	유해위험기계기구(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등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미 실시(1대당)	200	600	1,000
제94조 제2항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미 부착(1대당)	50	250	500
제95조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기계 사용(1대당)	300	600	1,000
제114조 제1항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미 게시(대상물질 1종당) * 2021.1.16.부터 시행(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과태료 금액 적용, 괄호)	100 (10)	200 (20)	500 (50)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미게시한 경우(대상물질 1종당) * 2021.1.16.부터 시행(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과태료 금액 적용, 괄호)	10 (5)	20 (10)	50 (20)
제114조 제3항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 실시(근로자 1명당) * 2021.1.16.부터 시행(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과태료 금액 적용, 괄호)	50 (5)	100 (10)	300 (15)
제115조 제2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사용 용기 등 경고표시 미 실시(대상 물질 1종당) * 2021.1.16.부터 시행(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과태료 금액 적용, 괄호)	50 (10)	100 (20)	300 (50)
제125조 제1항	작업환경측정 미 실시(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20	50	100
제129조 ~ 제130조	근로자 건강진단* 미 실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등	10	20	30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경우 바로 3차 위반 기준 적용
- 위 과태료 사항 외 나머지 과태료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 부과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